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이동현 의원 발의)

| | |
|----------|------|
| 의안 번호 | 2486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5월 28일

발 의 자 : 이동현 의원(1명)

찬 성 자 : 권수정, 김기덕, 김인호,
김제리, 김춘례, 김태수,
김평남, 김희걸, 박기재,
서윤기, 송아량, 양민규,
이영실, 이정인, 이태성,
임종국, 장상기, 전석기,
최 선, 홍성룡, 황규복
의원(21명)

1. 제안이유

- 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을 신설하여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노동인권교육 원칙 마련 및 교원들의 교수학습을 지원하고자 함.
- 조문 오기(誤記)를 바로잡고, ‘직업교육훈련’ 및 ‘현장실습’ 용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조례에 대한 시민 신뢰 제고 등을 도모하고자 함.
- 노동인권 및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실효성 있는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을 마련하고자 함.
- 전체 학교급의 노동인권교육 시행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노동인권교육이 시행되도록 지원하며, 현재 학생교육 및 교원연수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특수학교를 추가하여 장애학생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 규정(안 제1조의2).
- 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법적 근거 조항 오기 수정(안 제2조제4호).
- 다. “직업교육훈련” 및 “현장실습” 조항 신설 및 해당 조항 신설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조문 개정(안 제2조제6호~제8호).
- 라. 노동인권 및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 신설(안 제4조제3항).
- 마. 각급 학교에 노동인권교육 교육과정 반영에 관한 사항 신설 및 특수학교 학생의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8조제1항~제2항).
- 바. 일반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직업교육훈련 및 현장실습 담당 교직원
에 대한 교원연수의 관한 사항 개정(안 제9조제3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기본원칙) 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헌법」이 규정한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노동인권 옹호에 기여한다.
2. 우리 사회에서 논쟁적인 것은 학교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주입식 방식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학교 구성원 누구나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은 보장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제2조제4호 중 “제90조제10호”를 “제90조제1항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학교”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직업교육훈련”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 교육 및 직업훈련을 말한다.

8.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을 말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감은 노동인권 및 노동인권교육 관련 실태조사를 매 3년마다 실시 하고, 그 결과를 노동인권교육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중 직업교육훈련 혹은 현장실습”으로 한다.

① 각급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에 노동인권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 후단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일반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중 직업교육훈련 혹은 현장실습”으로, “소속 교직원들에 대한”을 “담당 교직원에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신 설></p> | <p><u>제1조의2(기본원칙) 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한민국헌법」이 규정한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노동인권 옹호에 기여한다. 2. 우리 사회에서 논쟁적인 것은 학교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주입식 방식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학교 구성원 누구나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은 보장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3. (생략) 4.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0호에 따른 학교를 |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3. (현행과 같음) 4. ----- ----- <p>제90조제1항제10호-----</p> |

말한다.

5. (생략)

6.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1호에 따른 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신설>

<신설>

제4조(노동인권교육시행계획) ①·

② (생략)

<신설>

제8조(노동인권교육) <신설>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특성

-----.

5. (현행과 같음)

6. "일반고등학교"란 -----

----- 학교를 말한다.

7. "직업교육훈련"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말한다.

8.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제4조(노동인권교육시행계획)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감은 노동인권 및 노동인권교육 관련 실태조사를 매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노동인권교육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노동인권교육) ① 각급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학교 교육 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교원연수 등) ①·②(생략)

③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수에 참여하는 교원들을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특히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중 직업교육 훈련 혹은 현장실습-----

-----.

제9조(교원연수 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 -----

----- .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일반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중 직업교육훈련 혹은 현장실습----- 담당 교직원에게 -----.

문서번호

2021052400000016

미첨부 사유서 (1호)

요청인 : 이동현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정수 팀장
원동아 예산분석관

접수일 : 2021.05.24.

회신일 : 2021.05.25.

내용문의 : 02-2180-7953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노동인권교육시행 계획), 제9조(교원연수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단, 같은 조례 제8조(노동인권교육)는 서울시교육청 기 추진 사업(민주시민생활교육과, '인권교육활성화', 2021년 사업예산 650,097천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바, 비용추계 제외(붙임 참고)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9조(교원연수 등)에 해당](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939,925천원(연평균 187,985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939,925천원으로 연평균 187,985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안 제4조(노동인권교육시행계획) 실태조사 비용은 서울시교육청이 기 추진하고 있는 이와 유사한 사업인 '고졸취업지원확대' 세부사업 인 '현장실습 지도점검 지원' 2021년 사업예산 300,000천원을 준용하여 추계하였고,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바, 1차년도와 4차년도에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제함

- 안 제9조(교원연수 등) 특수학교 교직원 대상 장애학생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연수 비용은 서울시교육청이 기 추진하고 있는 이와 유사한 사업인 '특수학교 교직원 전문성 신장연수' 세부사업 인 '특수교사 전문성신장 및 직무역량 강화 연수운영' 2021년 사업예산 67,985천원을 준용하여 추계함

-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939,925천원(연평균 187,985천원)

- 총비용 = 실태조사 비용 + 특수학교 교직원 대상 장애학생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연수 비용
 = 600,000천원 + 339,925천원
 = 939,925천원

(단위 : 천원)

| 연도 | | 1차년도 (2021년) | 2차년도 (2022년) | 3차년도 (2023년) | 4차년도 (2024년) | 5차년도 (2025년) | 합 계 |
|----|---|-----------------|-----------------|-----------------|-----------------|-----------------|---------|
| 세입 | - | - | - | - | - | - | - |
| | 소계(a) | - | - | - | - | - | - |
| 세출 | 실태조사 비용 (안제4조) | 300,000 | - | - | 300,000 | - | 600,000 |
| | 특수학교 교직원 대상 장애학생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연수 비용 (안제9조) | 67,985 | 67,985 | 67,985 | 67,985 | 67,985 | 339,925 |
| | 소계(b) | 367,985 | 67,985 | 67,985 | 367,985 | 67,985 | 939,925 |
| | 총비용(b-a) | 367,985 | 67,985 | 67,985 | 367,985 | 67,985 | 939,925 |

○ 실태조사 비용 ≙ 600,0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1차년도4차년도실태조사비용)_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

- 연간 실태조사 비용 ≙ 300,000천원(1차년도 및 4차년도 발생 전제)

· 서울시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졸취업지원확대 세부사업인 '현장실습 지도점검 지원'의 2021년사업예산(300,000천원) 준용

사업대상: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학생 및 선도기업

사업내용: 교육부 위탁 현장실습 선도기업 수행기관 운영비 지원, 직업계고 학교전담노무사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참석 및 현장실습 참여 학생 사전교육 지원 등

○ 특수학교 교직원 대상 장애학생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연수 비용 ≙ 339,925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특수학교교직원연수비용)_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

- 연간 특수학교 교직원 대상 장애학생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연수 비용
≒ 67,985천원

·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학교(급)교원전문성신장연수 세부 사업인 '특수교사 전문성 신장 및 직무역량 강화 연수운영'의 2021년사업예산(67,985천원) 준용

사업내용: 특수학교 특수교육교원을 대상으로 최신 특수교육의 이론 및 실제에 근거한 특수교육 발전 방안 제정립 및 특수교육의 질 제고 목적으로 연수, 조사연구, 운영우수기관 방문, 전문가 특강, 집단토의 등을 통한 통합교육특수교육 운영 내실화 방안 수립 및 적용 등 실시

4. 작성자

| | |
|--------|---------|
| 시의회사무처 | 예산정책담당관 |
| 담 당 관 | 조도형 |
| 사업평가팀장 | 이정수 |
| 주 무 관 | 원동아 |

☎ 02-2180-7953
e-mail : dongyal@seoul.go.kr

【붙임】 서울시교육청 기 추진사업

(단위:천원)

| 구분 | 세부사업명 (세세부사업명) | 2021년 예산 | 사업내용 |
|-------------|-------------------|-------------|--|
| 제8조(노동인권교육) | 인권교육활성화 | 650,09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교육 활성화를 통한 인권존중의 학교문화 실현 ·학생인권 증진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및 운영 - 내용 : (교원직무연수)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학생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교원 직무연수: 초·중·고, 중등입문, 통합심화과정 운영(3회) ·(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지도자료 활용연수) 교육청 개발 초등학교 교육과정 지도 자료에 대한 초등교원 활용연수(2회) ·노동인권전문 강사를 활용한 학생 및 교원대상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시행 ·초·중등 교원들을 대상으로 학교 노동인권교육 교원지원단 구성 및 운영, 노동인권교육 담당자들에 대한 연수 시행 연수 시행(2회) ·학생 노동인권 증진 협력학교 8교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및 상담, 동아리 활동 등 지원 ·협력기관(서울시 자치구 노동센터)과 연계한 학생 노동인권교육 및 상담 실시 등 - 소요예산 : 650,097천원 |

자료 :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